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가속주행소음 허용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금까지는 차량 총중량 2톤 이상의 오프로드(off-road)형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제표준화기구의 국제표준에 맞추어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허용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용노동부령 제164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7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영 제1조의2”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1일”을 “20일”로 한다.

제38조제2항 전단 중 “21일”을 “20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3. 사망진단서 또는 검시조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다른 제출 서류로 진폐근로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	-----	-----------

신청인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폐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및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진폐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	-----	-----------

신청인	기관명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진폐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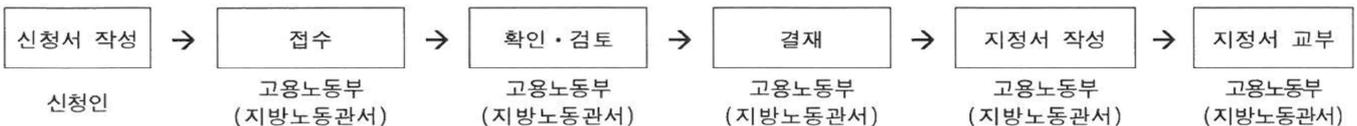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 신청 전 최근 3년간의 진폐 관련 연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종
	재해발생일	채용년월일
	퇴직년월일	진폐장해등급

지급신청 유족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관계
	입금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신청액					

본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수령한 보상 또는 배상내역	수령일자	수령금액	보상 또는 배상내역(수령근거)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기재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위와 같이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사업장명: 전화번호: 년 월 일

소재지: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업주: (서명 또는 인)

휴대전화번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담당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공단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관계기관 자료 제공 요청 동의서

본인은 귀 기관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료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법원행정처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아 진폐위로금 지급업무에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균임금산정명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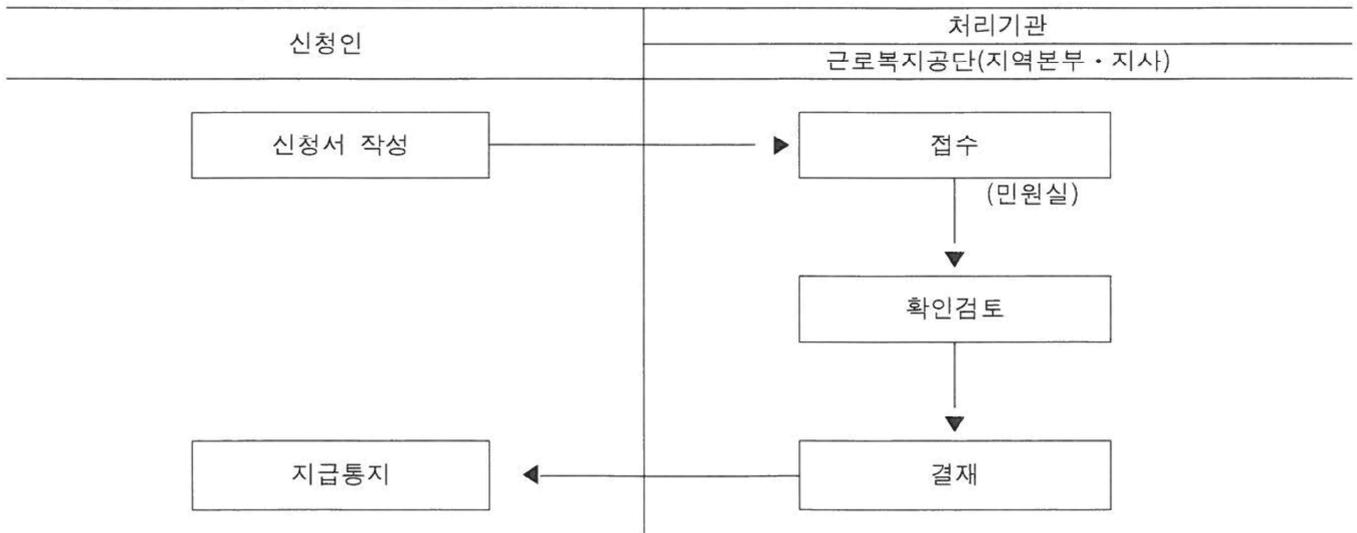
채용연월일		고용형태별		[]상용 []일용		
임금지급방법		월급, 주급, 일급, 시급, 기타		산정사유 발생연월일		
근로 기준법 제2조	임금계산기간	~	~	~	~	
	총일수	일	일	일	일	
	임금 명세					
		합계액	원	원	원	원
	평균임금	(총임금액) 원 ÷ (총일수) 일 =		원	전	
	통상임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참조)			원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평균임금 원 전

고용노동부령 제291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평균임금 원 전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을 스스로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를 지정하여 해당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측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진폐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11호, 2016.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 대행 제도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진폐위로금 지급 관련 신청 서식에 진폐위로금 지급을 위한 관계기관 자료 제공 요청과 관련된 신청인의 동의서를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6-3호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4-25호, 2014.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보편적 시청권 금지행위와 관련한 방송법 및 시행령의 체계정비에 따라 하위규정(고시)를 일부 개정함

※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중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상향 입법된 내용을 삭제하고 나머지 고시규정을 정비

2. 주요내용

가. 보편적 방송수단 확보 관련 (안 제2조 개정)

○ 중계방송권자등의 보편적 방송수단 확보 규정이 시행령으로 상향입법됨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 삭제

나. 실시간 방송 관련 (안 제3조 개정)

○ 중계방송권자의 실시간 방송의무가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비상사태 등) 규정이 시행령으로 상향입법됨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 삭제

다. 중계방송권의 거래거부 또는 지연 관련 (안 제4조 개정)

○ 중계방송권의 ‘거래거부 또는 지연의 유형’(협상요청 불응, 거래조건 차별 등) 규정이 시행령으로 상향입법됨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 삭제

※ 개정 시행령의 문구 및 체계 등을 반영하여 문구·체계 등을 조정